

강사료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①실험, 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실습강의라 한다.

②제1항 이외의 일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
③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
④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
⑤전임 및 초빙교수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⑥2인 이상이 담당하는 팀티칭과목의 시간은 책임수업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수를 담당 과목 교원 및 강사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제3조(책임시수) ①교원의 책임시수는 교무규정 제2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되,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시는 적은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②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도에서 미달된 책임시수를 보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4조(강사료 계산) ①시간강사의 강사료 및 전임, 초빙교원의 초과강사료는 [별표 2]에 의거 지급하고, 산업체 겸임교수의 강사료는 [별표 3]에 의거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②시간강의의 지급 범위는 전월 3주차까지의 강의 진행에 의하며, 수업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같이 합산할 수 있다.

③우송대학교 소속 전임·초빙교수가 본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, 책임시수는 우송대학교 수업시수와 합산하여 산정하되 소속대학에서 강사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책임시수를 적용받지 않는 수업은 출강하는 대학에서 지급한다.

제5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시험시간

2.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로 휴교 하였을 때

제6조(지급일) ①전임교원의 초과시수에 대한 초과강사료는 급여일과 같다. 단, 수업일수가 3주 이하일 때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될 수 있다.

②시간강의에 의한 강사료 지급은 매월 3일에 지급하되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

전날 지급될 수 있다.

③특별강의에 의한 강사료는 강의실시 후 별도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삭제) <개정 2016.2.1.>

[별표 2] 초과강사료 지급기준 (시간당 평균 단가, 단위 : 원)

구 분		주간	야간	비 고
전임교원,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		12,000	13,000	책임시수 초과분
우송대학교 전임교원, 초빙교원		대학 간 협약에 의함		원 소속대학에서 지급
시간강사	특	50,000		
	A	28,000		
	B	25,000		
	C	21,000		

[별표 3] 산업체 겸임교원 강사료 지급기준 (시간당 평균 단가, 단위 : 원)

시간당 강사료	35,000원
※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	